

등록신청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주식)
- **정정 사유** : ①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0. 9. 30.
- **정정 내용**

항 목	정정 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0.3. 31 기준	2020.8. 31 기준
매입/환매 방법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환매 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매입]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시 경과후 :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지급 17시 경과후 :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지급	<u>(2020.10.5. 시행)</u> [매입] 17시 이전 :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시 경과후 :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17시 이전 :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지급 17시 경과후 :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지급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u>2020.9.30. :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2020.10.5. 시행)</u>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환매시 기준가격 적	-	<u>2020.9.30. :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환매시</u>



모투자신탁의 연혁]	용일 변경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2020.10.5. 시행)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0.3. 31 기준	2020.8.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0.3. 31 기준	2020.8. 31 기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지분증권(주식 등)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 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 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지분증권(주식 등)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 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 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 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 준가격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청구시 기준가격 적용 일 변경	①17시 이전 : 제3영업일 ②17시 경과 후 : 제4영업 일	(2020. 10. 5. 시행) ①17시 이전 : 제4영업일 ②17시 경과 후 : 제5영업 일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 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환매청구시 기준가격 적용 일 변경	①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②17시 경과 후 : 제4영업 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 일에 환매대금 지급	(2020. 10. 5. 시행) ①17시 이전 :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②17시 경과 후 : 제5영업 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 일에 환매대금 지급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0.3. 31 기준	2020.8. 31 기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p>사항</p> <p>나. 주요 업무</p> <p>(3) 업무위탁</p> <p>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p>	<p>변경사항 반영</p>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가. 수익자총회 등</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u>한국예탁결제원에</u>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p> <p>-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u>전자등록기관에</u>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p> <p>-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p>

		<p>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신 설〉</p>	<p>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u>-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u></p> <p><u>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u></p> <p><u>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u></p> <p><u>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u></p> <p><u>-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u></p> <p><u>1. 대상금액 :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u></p>
--	--	---	--

			<p><u>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함</u></p> <p><u>2. 대상기간 :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u></p> <p><u>-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가. 정기보고서</p> <p>(2) 자산운용보고서</p> <p>(3) 자산보관·관리보고서</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p>	<p><u>예탁결제원</u></p> <p><u>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u></p>	<p><u>전자등록기관</u></p> <p><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나. 수시공시</p> <p>(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p>	<p><u>한국예탁원</u></p>	<p><u>전자등록기관</u></p>